

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및 발의일자 : 배상신 의원(2025. 11. 24.)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1월 25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7회 포항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-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(2025. 12. 22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배상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,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교통소통대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교통소통대책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제안근거

- 「도로법」 제23조, 제61조, 제97조
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4조, 제62조
-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5조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6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,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 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·검토·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
 -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교통소통대책의 수립, 검토,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
 - 안 제7조에서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
 -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관련법령을 살펴보면,
 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4조제5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에서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,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점용공사 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·검토·이행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, 도로점용허가 자체를 새로이 규정하거나 상위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, 위임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행정절차 정비로 사료됨.

○ 종합검토 결과,

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의 수립·검토·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도로관리심의회 및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제도를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